

2018년도

무형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 안건

- ▣ 회의일시 : 2018. 8. 17.(금) 14:0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서연호(위원장), 최성은, 채금석, 안귀숙,
진명(정혜린), 홍나영, 정복상, 조일상, 신타근,
김태식, 박상미(이상 11명)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목 차

【검토사항 4건】

1.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
2.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 보유자 인정 검토 4
3.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‘제와장’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
조사결과 검토 10
4.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조사자 검토 및 추천 19

검 토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

가. 제안사항

-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 보유자 김덕환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(‘17. 5. 8)가 접수됨에 따라,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(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
- 지 정 일 : ‘06. 11. 16.
- 전승자 현황
 - 보유자(1명) : 김덕환(‘35년생, 남 / ‘06. 11. 16. 인정)

(2) 확인조사 개요

- 기 간 : 2018. 2. 1.(목)
- 장 소 : 보유자 자택(경기도 성남시)
- 확인자 : 이동용 사무관, 전원일 주무관(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)
- 조사대상자 : 김덕환 (‘35년생, 남 / 금박, ‘06.11.16. 보유자 인정)

(3) 확인결과

- 김덕환(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성명 김덕환) 보유자는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렵고,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

라. 검토의견

-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, 해당자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감안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마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김덕환을 금박장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원안가결 11명

바. 특기사항 : 없음

2.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 보유자 인정 검토

가. 제안사항

-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에 따라, 보유자 인정조사 대상 종목인 제119호 ‘금박장’에 대하여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(‘18.5.11) 및 2단계 조사(‘18.6.22)를 실시하였고, 무형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(‘18.7.20.)에서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음.
-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3단계 조사를 실시(‘18.8.3~5)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(1) 지정 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
- 지정일 : ‘06. 11. 16.
- 전승자 현황
 - 보유자(1명) : 김덕환(‘06. 11. 16. 인정)
 - ※ 보유자 김덕환 2017. 5. 8. 명예보유자 신청한 상태임.

(2) 추진 경과

- 2018년 전승자 증원 계획에 포함(‘18.1.23)
- 보유자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신청 접수(‘18.3.16~4.16)
-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실시(‘18.5.11)
-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(‘18.5.25)
-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실시(‘18.6.22)
-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결과 검토(‘18.7.20)
-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 실시(‘18.8.3~5)

(3) 조사 개요

- 조사일자 : ‘18. 8. 3(금)~5(일)

- 조사장소 :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(조사대상자 공방)
- 조사자 : 관계전문가 3명
- 조사대상자 : 1명(김기호)
- 조사내용 (실기능력 평가) : 보유자 인정조사의 3단계 조사지표에 의거 전승능력(전승기량) 평가

라. 검토의견

-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‘금박장’ 은 ‘06. 11. 16 보유자로 인정된 김덕환이 활동하고 있으나,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유자가 2017.5.8. 명예보유자 신청을 제출한 상황으로 보유자 충원이 필요함
- 문화재청에서는 보유자 인정조사에 관한 규정[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437호/2017.8.30.)]을 개정하고 개인종목의 경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 조사방식을 도입하여, 단계별 적정기준에 도달한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(해당단계 통과자들의 경우 다음단계 평가 시 이전 단계들의 평가점수들을 누적하지 않음).
 - 1단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제출 서류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전승능력, 전승환경, 전수활동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, 2단계 조사에서는 면담, 과제 시연 등을 토대로 실기능력, 이해도, 교수능력, 전승의지 등을 평가하고, 3단계 조사에서는 심층기량 조사를 토대로 실기능력을 평가함
- 이번 3단계 보유자 인정조사는 지난 무형문화재위원회(제6차 회의, ‘18.7.20.) 검토 결과 선정된 김기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, 조사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인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

마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김기호를 금박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11명, 원안가결 11명

바. 특기사항 : 없음

3.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'제와장'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조사결과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4.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조사자 검토 및 추천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